

대기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

1. 대기환경보전법의 이해와 적용사례

3. 대기배출시설의 관리

3-8. 행정처분(개선명령, 조업정지 등)

3-8-3. 위반시 조치사항

가. 행정벌

❖ 근거 규정 : 법 제89조부터 제93조

○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

1. 법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
2. 법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
3. 법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4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5.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

○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1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
2.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3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4. 법 제32조제3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5.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
6. 법 제44조제7항(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)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○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
연재

- 1.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
조업한 자
- 2.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
○ 300만원 이하의 벌금

- 1.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
아니한 자
- 2.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
하지 아니하거나 임명(변경 임명 포함)에 대한
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3. 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
을 위반한 자
- 4.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·
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○ 200만원 이하의 벌금

- 1.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
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

나. 과태료

❖ 근거 규정 : 법 제94조

○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1.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
- 2.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
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
거짓으로 기록한 자
- 3.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4.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·관리기준을
지키지 아니한 자
- 5.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
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·보존
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·보존한 자
- 6.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 함유기준
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·사용한 자

○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1.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
하지 아니한 자
- 2.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
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- 3.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
받게 하지 아니한 자

- 4.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
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
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다. 행정처분

❖ 근거 규정 : 법 제84조, 시행규칙 제134조

○ 행정처분 기준 : “시행규칙 별표 36” 참조

4.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규제

4-1. 비산먼지의 규제

4-1-1. 정의

- 비산먼지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
배출되는 먼지를 말함

4-1-2. 규제내용

- 가)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
사에게 신고하고,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
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- 나)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
경우에는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,
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중지
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

- 다)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는 사업시행일 3일전
까지 하여야 함. 다만, 건축허가 대상사업장인 경우
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음

- 라)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
있어 “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
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”을 준수하되,
설치기술이나 공법 등 다른 이유로 인하여 기준
준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
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
있음

4-1-3. 비산먼지 발생사업

- 가) 시멘트·석회·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
및 가공업

- 나) 비금속 물질 채취·제조·가공업

- 다) 제1차 금속제조업

- 라)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
- 마) 건설업(지반 조성공사,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, 조경공사로 한정)
- 바) 시멘트 석탄 토사·사료·곡물·고철의 운송업
- 사) 운송장비 제조업
- 아)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
- 자) 고철·곡물·사료·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
- 차) 금속제품제조·가공업
 - 금속처리업 : 열처리 도금 도장 금속의 용접처리
 - 구조금속 제품제조업

4-1-4. 신고시기, 방법

- 가)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신고
 - 시멘트·석탄·토사·사료·곡물·고철 운송업을 제외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신고서 제출 (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에 신고)
 - 건설업을 도급하여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가 신고하여야 함
- * 신고서 공사장이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행정기관에 신고

나) 변경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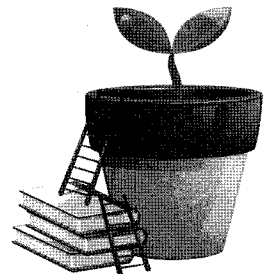
- 변경 전에 신고하되, 대표자 변경 및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(건설공사만 해당)에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- 변경신고 대상
 -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 -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
 -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
 -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 -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(건설공사의 경우만 해당)

다)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또는 조치기준 : 시행규칙 별표14

-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·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 사업의 경우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(별표 15)을 적용할 수 있음
 - 시멘트 제조업자
 -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
 - 석탄제품 제조업자
 - 건축물 축조공사자
 - 토목공사자

4-1-5. 신고서 처리

- 가) 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현장확인 없이 서류상으로 적·부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



- 관할 행정기관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신청서 검토시 발생사업별 비산먼지 설치계획에 대한 적정여부(공정특성에 적합한 방진시설 및 방진효율 등), 해당 사업장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진시설 설치토록 가능

나) 처리기간 : 4일

4-2.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

4-2-1. 규제의 필요성

- 가) VOC는 자체의 성질도 유해할 뿐 아니라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2차 오염유발
- 나) 최근 오존오염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단기환경기준을 초과
- 다) VOC는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대류권 오존오염,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 및 건강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196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

4-2-2. 규제내용

- 가)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시설 설치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
- 나)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VOC 배출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
- 다)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
- 라)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
 - ①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
 - ②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
 - ③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·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

4-2-3. 규제대상 VOC

- 가)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·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
하여 고시하는 것

나) 환경부고시 제2004-141호(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) 고시에 의거 아래의 37종 물질 고시

<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 >

번호	제품 및 물질명	분자식	CAS No.	
1	아세트알데히드	Acetaldehyde	C ₂ H ₄ O[CH ₃ CHO]	75-07-0
2	아세틸렌	Acetylene	C ₂ H ₂	74-86-2
3	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	Acetylene Dichloride	C ₂ H ₂ Cl ₂	540-59-0
4	아크롤레인	Acrolein	C ₃ H ₄ O	107-02-8
5	아크릴로니트릴	Acrylonitrile	C ₃ H ₃ N	107-13-1
6	벤젠	Benzene	C ₆ H ₆	71-43-2
7	1, 3-부타디엔	1, 3-Butadiene	C ₄ H ₆	106-99-0
8	부탄	Butane	C ₄ H ₁₀	106-97-8
9	1-부텐, 2-부텐	1-Butene, 2-Butene	C ₄ H ₈ [CH ₃ CH ₂ CHCH ₂], C ₄ H ₈ [CH ₃ (CH) ₂ CH ₃]	106-98-9 107-01-7
10	사염화탄소	Carbon Tetrachloride	CCl ₄	56-23-5
11	클로로포름	Chloroform	CHCl ₃	67-66-3
12	사이클로헥산	Cyclohexane	C ₆ H ₁₂	110-82-7
13	1, 2-디클로로에탄	1, 2-Dichloroethane	C ₂ H ₄ Cl ₂ [Cl(CH ₂) ₂ Cl]	107-06-2
14	디에틸아민	Diethylamine	C ₄ H ₁₁ N[(C ₂ H ₅) ₂ NH]	109-89-7
15	디메틸아민	Dimethylamine	C ₂ H ₇ N	124-40-3
16	에틸렌	Ethylene	C ₂ H ₄	74-85-1
17	포름알데히드	Formaldehyde	CH ₂ O[HCHO]	50-00-0
18	n-헥산	n-Hexane	C ₆ H ₁₄	110-54-3
19	이소프로필 알콜	Isopropyl Alcohol	C ₃ H ₈ O[(CH ₃) ₂ CHOHCH ₃]	67-63-0
20	메탄올	Methanol	CH ₄ O[CH ₃ OH]	67-56-1
21	메틸에틸케톤	Methyl Ethyl Ketone	C ₄ H ₁₀ O[CH ₃ COCH ₂ CH ₃]	78-93-3
22	메틸렌클로라이드	Methylene Chloride	CH ₂ Cl ₂	75-09-2
23	메틸테리부틸에터(MTBE)	Methyl Tertiary Butyl Ether	C ₈ H ₁₈ O[CH ₃ OC(CH ₃) ₂ CH ₃]	1634-4-4
24	프로필렌	Propylene	C ₃ H ₆	115-07-1
25	프로필렌옥사이드	Propylene Oxide	C ₃ H ₆ O	75-56-9
26	1,1,1-트리클로로에탄	1,1,1-Trichloroethane	C ₂ H ₃ Cl ₃	71-55-6
27	트리클로로에틸렌	Trichloroethylene	C ₂ HCl ₃	79-01-6
28	휘발유	Gasoline	-	86290-81-5
29	납사	Naphtha	-	8030-30-6
30	원유	Crude Oil	-	8002-5-9
31	아세트산(초산)	Acetic Acid	C ₂ H ₄ O ₂	64-19-7
32	에틸벤젠	Ethylbenzene	C ₈ H ₁₀	100-41-4
33	니트로벤젠	Nitrobenzene	C ₆ H ₅ NO ₂	98-95-3
34	톨루엔	Toluene	C ₇ H ₈	108-88-3
35	테트라클로로에틸렌	Tetrachloroethylene	C ₂ Cl ₄	127-18-4
36	자일렌 {o-, m-, p- 포함}	Xylene	C ₈ H ₁₀	1330-20-7 [95-47-6 108-38-3 106-42-3]
37	스티렌	Styrene	C ₈ H ₈	100-42-5

* 비고 : CAS No[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]는 미국화학회(ACS; American Chemical Society)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.